

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(제91조의2제1항 관련)

1. 저장시설

- 가. 저장용량은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일 것
- 나.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·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·표시되어 있을 것
- 다.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
- 라.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일 것
- 마.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·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

2. 처리시설

- 가. 개별 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처리시설의 합계 처리능력 기준을 준수할 것
- 나.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와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
- 다.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것
- 라.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
- 마.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
- 바.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·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